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07.9.7, 2007도47]

【판시사항】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동용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흥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선거구민을 비롯한 8명이 식사를 하던 식당을 찾아가서 홍보용 명함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 이번에 시흥시장 후보로 나온 김윤식입니다.

시흥시에 대해 불편하거나 고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인사를 하고, 그곳에서 약 20~30분간 동석하여 부근의 주차문제, 교육세부과문제 등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주심)